

忠清北道國家有功者團體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(案)

審 查 報 告 書

1992. 1. 20
內 務 委 員 會

1. 審查結果

- 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 및 회부일자
 - 제출일자 : 1992년 1월 8일
 - 회부일자 : 1992년 1월 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5회 임시회
 - 제1차 내무위원회(1992. 1. 17)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안병완)

가. 제안이유

- 國家有功者團體는 地方稅法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지방세비과세 대상이나 그중 수익사업용부동산은 地方稅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.
- 그러나 國家有功者團體는 수익사업을 통해 團體運營資金을 마련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國家有功者에 대한 支援側面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여 도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여 과세면제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면제대상 :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, 기타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함.
- 면제세목 : 취득세, 등록세, 공동시설세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민귀식)

- 地方稅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非營利事業者가 취득·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取得稅 및 登錄稅를 非課稅토록 規定하고 있으나 다만, 수익사업용 不動產은 課稅토록 規定되어 있음.
- 그러나 國家有功者團體는 不動產의 임대 및 기타수익사업에 의하여 團體 運營資金을 마련하는 등 運營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國家有功者의 支援側面에서 계속 免除措置가 必要하므로 忠淸北道國家有功者團體에 대한 道稅課稅免除條例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(안)